

#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8. 16.

김영수·이은진·박진섭·김종복·배현정·오문섭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8. 18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8. 29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김영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화성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,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2조)
- 연구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기금 및 재산운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6조)
- 연구·조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자문위원회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~제9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오현문)

- 지방연구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, 우리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연구개발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정책발굴을 통한 주민의 정책만족도를 높이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8. 16.

김종복·이은진·박진섭·김영수·배현경·오문섭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8. 18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8. 29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김종복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~제3조)
-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7조)
- 수당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오현문)

- 우리시 분야별 전문가와 市, 市의회,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·관 협업의 정책 자문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8. 1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8. 18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8. 29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)

### 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. 12. 31.자로 종료됨에 따라 「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),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(민간위탁의 동의요청)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 내용
  -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

사무내용	시설개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</li><li>· 경영 및 창업 지원</li><li>· 마케팅 상담, 판로개척, 브랜드 강화 등 활동 지원</li><li>·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지원</li><li>·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</li><li>·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위치) 팔탄면 서촌길 19</li><li>· 규모) 지상 2층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→ 대지면적 2,321㎡</li><li>→ 건축연면적 656㎡</li></ul></li><li>· 주요시설) 사무실, 회의/강의실, 창업보육실, 주차장 등</li></ul>

### ○ 위탁기간

- 2023. 1. 1. ~ 2024. 12. 31.(2년)

○ 소요예산

- 842,883천원 ※2022년도 예산, 2023년 예산은 향후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

○ 수탁자 선정방식

- 공개모집 후 「화성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」 심의를 통하여 선정

○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

-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적인 인적·기술적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노하우와 역량 활용 가능
- 지역·민간주도의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는 전문 지원기관으로의 역할 기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오현문)

- 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 위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 인력 규모와 소요예산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2022년 수시(3차)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8. 1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8. 18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8. 29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회계과장 이호경)

### 가. 제안이유

#### ○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 변경(취소) 계획

- 비봉습지 내 생물자원보전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생태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, 환경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생태 관련 교육 콘텐츠 등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함.

#### ○ 시청사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 변경(취소) 계획

- 주차타워 및 의회청사 건립 착공 시기에 맞춰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, 토지주 협의 결과 감정가보다 큰 금액 요구 등 협의 매수가 어려워 적정한 시기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계획을 취소 결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○ 재산목록(취득재산)

#### 2022년도 수시(3차)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취소 재산 목록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표시			재산가액	취소시기	취소사유	소관부서
	구분	소재지	수량(면적)				
계	토지		3,540	452,766			
	건물		600	4,192,000			
	기타		-	-			
1	토지	-	-	-	-	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취득 취소	기후환경과
	건물	비봉습지공원 공유수면	600	4,192,000	2022		
	기타	-	-	-	-		
2	토지	남양리 1854-51 외 1필지	3,540	452,766	2022	토지구 협의 취득 불가에 따른 취득 취소	회계과
	건물	-	-	-	-		
	기타	-	-	-	-		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오현문)

#### ○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 변경(취소) 계획

-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마트도시사업의 효과가 미진한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(VR 공간) 설치사업 계획을 취소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됨.

#### ○ 시청사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 변경(취소) 계획

- 불합리하게 높은 금액의 재산취득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